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89
----------	------------

제안일자 : 2025년 4월 22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용어 해석상의 차이를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12조제4항의 신고·민원에 대한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즉시”를 “지체없이”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즉시”를 “지체없이”로 수정함(안 제12조제4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4호 중 “즉시”를 “지체없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1. ~ 7. (현행과 같음) 8. “굴착영향범위”란 <u>법 제14조 및 법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를 말한다.</u>	제2조(정의) ----- ----- ----- 1. ~ 7. (개정안과 같음) 8.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③ (생략) <u><신설></u>	제12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지하개발 공사장을 포함한다)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u><신설></u>	제12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지체없이 ----- ----- ----- ----- ----- ----- ⑤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공사 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를 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개정안과 같음)
--------------------------	---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굴착영향범위”란 법 제14조 및 법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제1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현장(지하개발 공사장을 포함한다)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 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의 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공사 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를 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굴착영향범위”란 법 제14조 및 법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제12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 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③ (생략) <신설>	제12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 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현장(지하개발 공사장을 포함한다)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 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 통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⑤ 제4항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의 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공사 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

통제를 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